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2가단1047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1. 15. 접수 제1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